

자동차검사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검사기간 경과안내, 검사명령 및 같은법 제8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속초시



아

래

1. 대상 : 손은석 외 142건
2. 공고기간 : 2017. 4. 17. ~ 2017. 5. 3.
3. 서류의 명칭 : 자동차검사 기간경과 및 명령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4. 서류의 내용 및 반송사유 : 붙임 내역서 참조
5. 의견진술 등

자동차정기검사 미검자는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경과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6. 문의처 : 속초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33-639-2192)